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

2007. 11

성명재 · 박임수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8
1. 한 국	8
가. 주세(2007년 5월 현재)	8
나. 담배세	9
다. 석유류 관련 개별소비세의 구조	9
라. 특별소비세	10
2. 미 국	11
가. 주세	12
나. 담배세	14
다. 유류세	16
라. 기타 개별소비세	18
3. 영 국	19
가. 주세	19
나. 담배세	20
다. 유류세	20
라. 기타	21
마. 소비세의 예시	22
4. 캐나다	22
가. 주세	23
나. 담배세	24
다. 유류세	24
라. 자동차소비세	24
5. 일 본	25
가. 주세	25

나. 담배세	26
다. 석유류세	27
라. 기타	27
6. 대 만	29
가. 주세	30
나. 담배세	30
다. 유류세	31
라. 기타	31
마. 유흥세(amusement tax)	32
7. 홍 콩	32
가. 주세	32
나. 담배세	33
다. 석유류세	33
8. 중 국	33
가. 주세	34
나. 담배세	34
다. 석유류세	34
라. 기타 소비세	35
Ⅲ. 각국의 주요 개별소비세 품목 비교	36
1. 주세의 국제비교	36
가. 맥주	36
나. 와인	39
다. 맥주와 와인 외의 주류	41
2. 담배세의 국제비교	44
3. 석유류의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47
4. 자동차 취득단계 세금의 국제비교	48
Ⅳ. 요 약	50
1.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비교	50
2. OECD 국가의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 비교	52
참고문헌	53

표목차

〈표 II-1〉 주세의 구조(2007년 5월 현재).....	8
〈표 II-2〉 담배소비세의 구조(2007년 5월 현재).....	9
〈표 II-3〉 궤련의 소비세 구조(2007년 5월 현재).....	9
〈표 II-4〉 석유류 특별소비세의 구조(2007년 5월 현재).....	9
〈표 II-5〉 특별소비세의 구조(2007년 5월 현재).....	10
〈표 II-6〉 미국 연방 주세(2005년 1월 현재).....	12
〈표 II-7〉 州 주세(2007년 1월 현재).....	13
〈표 II-8〉 미국의 연방 담배세(2005년 1월 현재).....	14
〈표 II-9〉 미국의 州 담배세(2007년 1월 현재).....	14
〈표 II-10〉 미국의 연방 유류세(2006년 7월 현재).....	16
〈표 II-11〉 미국의 州 유류세(2007년 1월 현재).....	17
〈표 II-12〉 미국의 기타 개별소비세.....	18
〈표 II-13〉 영국의 주세(2007년 3월 기준).....	19
〈표 II-14〉 영국의 담배세(2007년 3월 현재).....	20
〈표 II-15〉 영국의 유류세(2007년 3월 현재).....	20
〈표 II-16〉 영국의 기타 개별소비세(2007년 3월 현재).....	21
〈표 II-17〉 영국의 소비세 예시(2005년 4월 기준).....	22
〈표 II-18〉 캐나다의 주세(2006년 7월 현재).....	23
〈표 II-19〉 캐나다의 담배세(2006년 7월 현재).....	24
〈표 II-20〉 캐나다의 유류세(2006년 8월 현재).....	24
〈표 II-21〉 캐나다의 자동차소비세(2006년 8월 현재).....	25
〈표 II-22〉 일본의 주세(2006년 3월 현재).....	26
〈표 II-23〉 일본의 담배세(2006년 3월 현재).....	27

〈표 II-24〉 일본의 석유류세(2006년 3월 현재).....	27
〈표 II-25〉 일본의 자동차톤세(2006년 3월 현재).....	28
〈표 II-26〉 일본의 전기세(2006년 3월 현재).....	29
〈표 II-27〉 일본의 기타 지방소비세(2006년 3월 현재).....	29
〈표 II-28〉 대만의 주세(2006년 1월 현재).....	30
〈표 II-29〉 대만의 담배세(2006년 1월 현재).....	30
〈표 II-30〉 대만의 유류세(2006년 1월 현재).....	31
〈표 II-31〉 대만의 기타 소비세(2006년 1월 현재).....	31
〈표 II-32〉 대만의 유흥세(2006년 1월 현재).....	32
〈표 II-33〉 홍콩의 주세(2007년 2월 현재).....	32
〈표 II-34〉 홍콩의 담배세(2007년 2월 현재).....	33
〈표 II-35〉 홍콩의 석유류세(2007년 2월 현재).....	33
〈표 II-36〉 중국의 주세(2006년 상반기 현재).....	34
〈표 II-37〉 중국의 담배세(2006년 상반기 현재).....	34
〈표 II-38〉 중국의 석유류세(2006년 상반기 현재).....	34
〈표 II-39〉 중국의 기타 소비세(2006년 상반기 현재).....	35
〈표 III-1〉 맥주 주세의 국제비교(2005년 1월 현재).....	36
〈표 III-2〉 와인 주세의 국제비교(2005년 1월 현재).....	39
〈표 III-3〉 기타 주류에 대한 주세의 국제비교(2005년 1월 현재).....	41
〈표 III-4〉 담배세의 국제비교(2005년 1월 현재).....	45
〈표 III-5〉 담배가격 구조의 국제비교(2007년 2월 현재).....	46
〈표 III-6〉 석유류세의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2006년 4/4분기 현재).....	47
〈표 III-7〉 자동차 취득단계 세금의 국제비교(2006년 1월 현재).....	48
〈표 IV-1〉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비교.....	50
〈표 IV-2〉 OECD 국가의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 비교.....	52

I. 서론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과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체계를 비교
 - 거의 모든 국가에서 주류, 담배류, 유류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과세
 - 그 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차이가 큰 편
- 개별소비세의 과세체계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
 - 주류와 석유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량세 형태로 과세
 - 다만 우리나라와 멕시코에서는 주류에 대해 종가세 형태로 과세
- 개별소비세의 부과 목적은 크게 2가지 정도로 구분 가능
 - 소비 억제: 주류, 담배, 석유류 등이 해당
 - 역진성 완화: 사치품 및 고가품 등이 해당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치세로서의 특별소비세 과세목적이 거의 사라진 상태

Ⅱ.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1. 한 국

-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이상 국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이상 지방세) 등이 대표적
- 부가세(surtax)로서 교육세와 지방교육세가 개별소비세 본세에 부과

가. 주세(2007년 5월 현재)

〈표 II-1〉 주세의 구조(2007년 5월 현재)

주 종	규 격	세 율
주정	95도 이상 (곡물주정은 85~90도)	57,000원/kl(95도)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매 1도마다 600원씩 가산)
〈발효주〉 탁 주 약 주 청 주 맥 주 과실주		5% 30% 30% 72% 30% (소규모 승인제조 15%)
〈증류주〉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불휘발분 2도 이상	72% 72% 72% 72% 72% 72%
〈기타주류〉 • 발효방법에 의한 제성주류로서 발효주가 아닌 것 • 발효에 의하여 숙성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72% 30%

주: 1. 주세법상 주류(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13종

2. 주류세액 = 출고가격 × 세율

3.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는 주세액의 30%, 주세율이 70% 이하인 주류는 주세액의 10%의 교육세가 부과(단, 주정·탁주·약주는 제외)

자료: 주세법 법률 제8139호(2006년 12월 30일), 교육세법 법률 8137호(2006년 12월 30일)

나. 담배세

〈표 II-2〉 담배소비세의 구조(2007년 5월 현재)

종 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흡연용담배	컬러	641원/20개비당	담배소비세액의 50/100
	파이프담배	1,150원/50그램당	
	엽컬러	3,270원/50그램당	
	각컬러	1,150원/50그램당	
씹는 담배		1,310원/50그램당	
냄새맡는 담배		820원/50그램당	

주: 폐기물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연초생산농민안정기금 15원이 부과
자료: 지방세법

〈표 II-3〉 컬러의 소비세 구조(2007년 5월 현재)

(단위: 원/갑)

담배가격	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연초생산 농민안정기금	부가가치세
200원 초과	1,337.5원	641원	320.5원(50%)	7원	354원	15원	공급가액 10%
200원 이하	60원	40원	20원(50%)				

다. 석유류 관련 개별소비세의 구조

〈표 II-4〉 석유류 특별소비세의 구조(2007년 5월 현재)

품 목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휘발유	630(526)원/ℓ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100인 교육세와 265/1,000인 주행세
경유	454원(351원)/ℓ	
등유	181원/ℓ	
중유	17원/ℓ	
프로판(LPG)	40원/kg	
부탄(LPG)	360원/kg	
천연가스(LNG)	60원/kg	
부생연료유	147원/ℓ	

주: 1. 특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세율의 3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
세율 적용 가능
2. 휘발유는 탄력세율로 526원/ℓ를 적용, 경유는 탄력세율로 351원/ℓ를 적용
자료: 특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라. 특별소비세

〈표 II-5〉 특별소비세의 구조(2007년 5월 현재)

품 목	기준가격	세율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20%
수렵용 총포류		20%
녹용, 로열젤리, 향수		7%
보석 등	200만원	20%
귀금속제품	200만원	20%
고급사진기	200만원	20%
고급시계	200만원	20%
고급모피	200만원	20%
고급용단	200만원	20%
고급가구	500만원, 800만원	20%
승용차	2000cc 초과	10%
승용차	2000cc 이하	5%
경마장	1인 1회 입장	500원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 입장	10,000원
골프장	1인 1회 입장	12,000원
카지노	1인 1회 입장	50,000원
경륜장	1인 1회 입장	200원
유흥주점 등	유흥음식요금	10%

주: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 입장에 2,000원을 적용하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3,500을 적용
 자료: 특별소비세법

2. 미 국

□ 미국의 소비세는 연방세와 주세(州稅)로 이원화

- 연방소비세는 모두 개별소비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류, 담배, 유류 및 특정물품 등에 한정하여 과세
- 주소비세는 판매세(sales tax)와 주개별소비세로 구성

□ 연방소비세는 IRS Code Sec. 4001~5000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류, 항공운송, 총기, 담배, 주류, 백신 및 오존과괴물질 등의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과세

- 종전에는 사치품(luxury goods)과 고가승용차에 대해 사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각각 1993년과 2002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
- 담배와 주류, 총기류에 대한 소비세는 TTB(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에서 관리

□ 주판매세는 소매단계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하여 과세

- 판매세의 세율은 평균적으로 약 5% 수준이며, 주정부마다 다소간의 세율 차이가 있으며 과세대상의 범위도 차이가 있음.
- Alaska, Delaware, Montana, New Hampshire, Oregon 등 5개의 주에서는 판매세를 과세하지 않음.
- 주류, 유류, 담배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주소비세도 과세
- 다만 Alabama를 포함한 18개 주에서는 주류에 대해 소비세 대신 전매제도를 시행

가. 주세

1) 연방 주세

〈표 II-6〉 미국 연방 주세(2005년 1월 현재)

품목	구 분	세 금		패키지별 세금	
		기준(단위)	세율	기준(단위)	세율
맥주	기본	배럴(31갤런)	\$18	12온즈캔	\$0.05
	200만배럴 이하를 생산하는 양조자의 최초 6만배럴까지	배럴(31갤런)	\$7	12온즈캔	\$0.05
와인	알콜도수 14% 이하	와인갤런	\$1.07	750ml병	\$0.21
	14% 초과 21% 이하	와인갤런	\$1.57	750ml병	\$0.31
	21% 초과 24% 이하	와인갤런	\$3.15	750ml병	\$0.62
	자연발포(naturally sparkling)	와인갤런	\$3.40	750ml병	\$0.67
	인공탄산(artificially carbonated)	와인갤런	\$3.30	750ml병	\$0.65
	사과와인(hard cider)	와인갤런	\$0.226	750ml병	\$0.04
증류주		proof갤런	\$13.50	750ml병(80 proof)	\$2.14

주: 1. 알콜도수 24% 초과와인 증류주(distilled spirits)로 분류됨
 2. 1와인갤런은 약 3.8리터
 3. 1proof갤런은 100proof 또는 알콜도수 50%인 1갤론과 같음.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www.ttb.gov)

2) 州 주세

□ 증류주(distilled spirits)의 경우, 18개 주에서 주정부가 전매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주단위의 주세는 없음.

○ 와인(wine)의 경우, 4개 주에서 주정부가 전매제도를 실시

〈표 II-7〉 州 주세(2007년 1월 현재)

(단위: 달러/갤런)

	판매세 적용 여부	맥주	와인	증류주
Alabama	○	0.53	1.70	전매제 실시
Alaska	—	1.07	2.50	12.50
Arizona	○	0.16	0.84	3.00
Arkansas	○	0.23	0.75	2.50
California	○	0.20	0.20	3.30
Colorado	○	0.08	0.32	2.28
Connecticut	○	0.19	0.60	4.50
Delaware	—	0.16	0.97	5.46
Florida	○	0.48	2.25	6.50
Georgia	○	0.32	1.51	3.79
Hawaii	○	0.93	1.38	5.98
Idaho	○	0.15	0.45	전매제 실시
Illinois	○	0.18	0.73	4.50
Indiana	○	0.11	0.47	2.68
Iowa	○	0.19	1.75	전매제 실시
Kansas	○	0.18	0.30	2.50
Kentucky	○	0.08	0.50	1.92
Louisiana	○	0.32	0.11	2.50
Maine	○	0.35	0.60	전매제 실시
Maryland	○	0.09	0.40	1.50
Massachusetts	○	0.11	0.55	4.05
Michigan	○	0.20	0.51	전매제 실시
Minnesota	○	0.15	0.30	5.03
Mississippi	○	0.42	0.35	전매제 실시
Missouri	○	0.06	0.30	2.00
Montana	—	0.14	1.06	전매제 실시
Nebraska	○	0.31	0.95	3.75
Nevada	○	0.16	0.70	3.60
New Hampshire	—	0.30	전매제 실시	전매제 실시
New Jersey	○	0.12	0.70	4.40
New Mexico	○	0.41	1.70	6.06
New York	○	0.11	0.19	6.44
North Carolina	○	0.53	0.79	전매제 실시
North Dakota	○	0.16	0.50	2.50
Ohio	○	0.18	0.30	전매제 실시
Oklahoma	○	0.40	0.72	5.56
Oregon	—	0.08	0.67	전매제 실시
Pennsylvania	○	0.08	전매제 실시	전매제 실시
Rhode Island	○	0.10	0.60	3.75
South Carolina	○	0.77	0.90	2.72
South Dakota	○	0.27	0.93	3.93
Tennessee	○	0.14	1.21	4.40
Texas	○	0.19	0.20	2.40
Utah	○	0.41	전매제 실시	전매제 실시
Vermont	○	0.26	0.55	전매제 실시
Virginia	○	0.29	1.51	전매제 실시
Washington	○	0.26	0.87	전매제 실시
West Virginia	○	0.18	1.00	전매제 실시
Wisconsin	○	0.06	0.25	3.25
Wyoming	○	0.02	전매제 실시	전매제 실시
Dist. of Columbia	○	0.09	0.30	1.50
중위수 값		0.18	0.69	3.75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fta/rate/tax_stru.html#Excise)

나. 담배세

1) 연방 담배세

〈표 II-8〉 미국의 연방 담배세(2005년 1월 현재)

종 류	1천개비당 세율		포장단위당 세율	
	단위	세율	단위	세율
소형담배(Small Cigarettes)	1,000units	\$19.50	pack of 20	\$0.39
대형담배(Large Cigarettes)	1,000units	\$40.95	pack of 20	\$0.82
소형시가(Small Cigars)	1,000units	\$1,828	pack of 20	\$0.04
대형시가(Large Cigars)	1,000 units	판매가격의 20.719% (단 \$48.75 한도)	1개당	\$0.05
파이프담배(Pipe Tobacco)	1lb.	\$1.0969	1 Ounce Tin or Pouch	\$0.07
씹는담배(Chewing Tobacco)	1lb.	\$0.195	1 Ounce Tin or Pouch	\$0.01
코담배(Snuff)	1lb.	\$0.585	1 Ounce Tin or Pouch	\$0.04
손으로 만 담배 (Roll-your-on Tobacco)	1lb.	\$1.0969	1 Ounce Tin or Pouch	\$0.07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www.ttb.gov)

2) 주 담배세

〈표 II-9〉 미국의 州 담배세(2007년 1월 현재)

주	소비세(센트/pack당)		주	소비세(센트/pack당)	
	Cigarettes	cigars, others		Cigarettes	cigars, others
Alabama	42.5	시가(10개): 4~40.5 기타: 0.6~5.25/온스당 ※소매가격에 따름	Nebraska	64	도매가의 20%
Alaska	160	도매가(Wholesale price)의 75%	Nevada	80	도매가의 30%
Arizona	118	시가(20개): 26.3~260 기타: 13.3/온스당 ※소매가격에 따름	New Hampshire	80	도매가의 19%

〈표 II-9〉의 계속

주	소비세(센트/pack당)		주	소비세(센트/pack당)	
	Cigarettes	cigars, others		Cigarettes	cigars, others
Arkansas	59.0	제조가(Manufactures Price)의 32%	New Jersey	240	도매가의 30%
California	87	도매가의 46.76%	New Mexico	91	생산가(Product value)의 25%
Colorado	84	제조가의 40%	New York	150	도매가의 37%
Connecticut	151	도매가의 20%	North Carolina	30	도매가의 3%
Delaware	55	도매가의 15%	North Dakota	44	시가: 제조가의 28% 기타: 16~60/온스
Florida	33.9	도매가의 25%	Ohio	125	도매가의 17%
Georgia	37	시가: 도매가의 23% 기타: 도매가의 10%	Oklahoma	103	시가(10개): 27~90% 기타: 공장도가의 30~40%
Hawaii	140	도매가의 40%	Oregon	118	도매가의 65%
Idaho	57	도매가의 40%	Pennsylvania	135	
Illinois	98	도매가의 18%	Rhode Island	246	도매가의 40%
Indiana	55.5	도매가의 18%	South Carolina	7	제조가의 5%
Iowa	36	도매가의 22%	South Dakota	53	도매가의 10%
Kansas	79	도매가의 10%	Tennessee	20	도매가의 6.6%
Kentucky	30	도매가의 7.5%	Texas	41	시가(10개): 1~15% 기타: 제조가의 35%
Louisiana	36	시가: 제조가의 8~20% 기타: 제조가의 33%	Utah	69.5	제조가의 35%
Maine	200	시가: 도매가의 20% 기타: 도매가의 78%	Vermont	119	제조가의 41%
Maryland	100	도매가의 15%	Virginia	30.0	도매가의 10%
Massachusetts	151	시가: 도매가의 30% 기타: 도매가의 90%	Washington	202.5	도매가의 75%
Michigan	200	도매가의 32%	West Virginia	55	도매가의 7%
Minnesota	123	도매가의 70%	Wisconsin	77	제조가의 25%
Mississippi	18	제조가의 15%	Wyoming	60	도매가의 20%
Missouri	17	제조가의 10%	Dist. of Columbia	100	
Montana	170	도매가의 50%	U.S. Median	80.0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fta/rate/tax_stru.html#Excise)

다. 유류세

1) 연방 유류세

〈표 II-10〉 미국의 연방 유류세(2006년 7월 현재)

종 류		단위	세율
휘발유(Gasoline)	일반	갤론	\$0.184
경유(Diesel)	일반	갤론	\$0.244
	기차용	갤론	\$0.024
	Diesel-water fuel emulsions	갤론	\$0.197
등유(Kerosene)	일반	갤론	\$0.244
Special Motor Fuel		갤론	\$0.184
액화석유가스(LPG)		갤론	\$0.136
액화천연가스(LNG)		갤론	\$0.119
압축천연가스(CNG)	2006년 9월 30일부터 적용	휘발유 1갤론과 에너지등가	\$0.183
항공용연료(비상업용)	휘발유	갤론	\$0.194
	휘발유 외	갤론	\$0.219
항공용연료(상업용)	휘발유 외	갤론	\$0.044

주: Special motor fuel은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등을 포함하는 액화연료를 지칭함. 그러나 휘발유, 경유, 등유, gas oil, fuel oil 등은 제외

자료: 미국 국세청, *Excise Taxes for 2006*, IRS Publication 510.

CCH editorial staff publicaton, *U.S. Master Excise Tax Guide-fifth edition*, A WoltersKluwer Company, 2005.

2) 州 유류세

〈표 II-11〉 미국의 州 유류세(2007년 1월 현재)

(단위: 센트/갤런)

주	휘발유			경유			Gasohol		
	소비세	추가세	계	소비세	추가세	계	소비세	추가세	계
Alabama	16.0	2.0	18.0	19.0		19.0	16.0	2.0	18.0
Alaska	8.0		8.0	8.0		8.0	0		0
Arizona	18.0		18.0	18.0		18.0	18.0		18.0
Arkansas	21.5		21.5	22.5		22.5	21.5		21.5
California	18.0		18.0	18.0		18.0	18.0		18.0
Colorado	22.0		22.0	20.5		20.5	22.0		22.0
Connecticut	25.0		25.0	26.0		26.0	25.0		25.0
Delaware	23.0		23.0	22.0		22.0	23.0		23.0
Florida	4.0	11.3	15.3	16.8	11.6	28.4	4.0	11.3	15.3
Georgia	7.5	7.7	15.2	7.5	8.8	16.3	7.5	7.7	15.2
Hawaii	16.0		16.0	16.0		16.0	16.0		16.0
Idaho	25.0	1.0	26.0	25.0	1.0	26.0	22.5	1.0	23.5
Illinois	19.0	1.1	20.1	21.5	1.1	22.6	19.0	1.1	20.1
Indiana	18.0		18.0	16.0		16.0	18.0		18.0
Iowa	21.0		21.0	22.5		22.5	19.0		19.0
Kansas	24.0		24.0	26.0		26.0	24.0		24.0
Kentucky	18.3	1.4	19.7	15.3	1.4	16.7	18.3	1.4	19.7
Louisiana	20.0		20.0	20.0		20.0	20.0		20.0
Maine	26.8		26.8	27.9		27.9	26.8		26.8
Maryland	23.5		23.5	24.25		24.25	23.5		23.5
Massachusetts	21.0		21.0	21.0		21.0	21.0		21.0
Michigan	19.0		19.0	15.0		15.0	19.0		19.0
Minnesota	20.0		20.0	20.0		20.0	20.0		20.0
Mississippi	18.0	0.4	18.4	18.0	0.4	18.4	18.0	0.4	18.4
Missouri	17.0	0.55	17.55	17.0	0.55	17.55	17.0	0.55	17.55
Montana	27.0		27.0	27.75		27.75	27.0		27.0
Nebraska	27.1	0.9	28.0	27.1	0.3	27.4	27.1	0.9	28.0
Nevada	24.0	0.8	24.8	27.0	0.75	27.75	24.0	0.8	24.8
New Hampshire	18.0	1.6	19.6	18.0	1.6	19.6	18.0	1.6	19.6
New Jersey	10.5	4.0	14.5	13.5	4.0	17.5	10.5	4.0	14.5
New Mexico	17.0	1.8	18.8	21.0	1.8	22.8	17.0	1.8	18.8
New York	8.0	16.6	24.6	8.0	14.8	22.8	8.0	16.6	24.6
North Carolina	29.9	0.25	30.15	29.9	0.25	30.15	29.9	0.25	30.15
North Dakota	23.0		23.0	23.0		23.0	23.0		23.0
Ohio	28.0		28.0	28.0		28.0	28.0		28.0
Oklahoma	16.0	1.0	17.0	13.0	1.0	14.0	16.0	1.0	17.0
Oregon	24.0		24.0	24.0		24.0	24.0		24.0
Pennsylvania	12.0	19.2	31.2	12.0	26.1	38.1	12.0	19.2	31.2
Rhode Island	30.0	1.0	31.0	30.0	1.0	31.1	30.0	1.0	31.0
South Carolina	16.0		16.0	16.0		16.0	16.0		16.0
South Dakota	22.0		22.0	22.0		22.0	20.0		20.0
Tennessee	20.0	1.4	21.4	17.0	1.4	18.4	20.0	1.4	21.4
Texas	20.0		20.0	20.0		20.0	20.0		20.0
Utah	24.5		24.5	24.5		24.5	24.5		24.5
Vermont	19.0	1.0	20.0	25.0	1.0	26.0	19.0	1.0	20.0
Virginia	17.5		17.5	16.0		16.0	17.5		17.5
Washington	34.0		34.0	34.0		34.0	34.0		34.0
West Virginia	20.5	11.0	31.5	20.5	11.0	31.5	20.5	11.0	31.5
Wisconsin	30.9	2.0	32.9	30.9	2.0	32.9	30.9	2.0	32.9
Wyoming	13.0	1.0	14.0	13.0	1.0	14.0	13.0	1.0	14.0
Dist. of Columbia	20.0		20.0	20.0		20.0	20.0		20.0
평균값	20.0	1.7	21.7	20.4	1.8	22.3	19.7	1.7	21.4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fta/rate/tax_stru.html#Excise)

라. 기타 개별소비세

(기준일 2006년 7월)

〈표 II-12〉 미국의 기타 개별소비세

품 목	단 위	세 율
중장비(Heavy Trucks, Trailers)	Chassis and body	소매가격 12%
고속도로형 타이어 (Highway-type Tires)	3,500lbs. 이상의 적재용량을 가진 타이어	10pound당 (3,500pound 이상의 적재용량부터) \$0.0945
	Biasply tires	10pound당 (3,500pound 이상의 적재용량부터) \$0.04725
	Super single tires	10pound당 (3,500pound 이상의 적재용량부터) \$0.04725
연료소비가 많은 대형차 (Gas Guzzler Tax)	연비(mileage rating) 기준	갤런당 12.5 이하 \$7,700
		12.5부터 22.5까지 10구간으로 분류 \$6,400부터 \$1,000까지 10구간으로 분류
		22.5 이상 \$0
낚시장비(Sport fishing equipment)	판매가격	10%
낚시도구상자(Fishing tackle boxes)	판매가격	3%
전기선박모터(Electric outboard motors)	판매가격	3%(한도 \$30)
활(Bows)	판매가격	11%
화살(Arrow shafts)	Shaft당	\$0.4
화살통(Quives) 등	판매가격	11%
석탄(Coal)	땅속광물(underground mines)	톤 \$1.1(단, 판매가격의 4.4% 한도)
	표면광물(surface mines)	톤 \$0.55(단, 판매가격의 4.4% 한도)
백신(Vaccines)		1회 복용분(dose) \$0.75
통신 (Comumunications)	전화 및 전신	지불금액 3%
운송서비스	항공 승객	국내티켓 7.5%
		국제티켓 \$14.5
	항공 화물	운행요금 6.25%
	수로 승객	인당 \$3
	수로 화물	화물의 가격 0.125%
환경세 (Environmental taxes)	원유(crude oil)	배럴 \$0.05
	Ozone-Depleting Chemicals	CFC-11 외 20종 \$10.75/kg

주: 오존파괴화학물질(ODCs)에는 CFC(chlorofluoro-carbons)-11를 포함하여 약 20종이 해당하며 각각 다른 세금을 적용받음

자료: 미국 국세청, *Excise Taxes for 2006*, IRS Publication 510.

CCH editorial staff publicaton, *U.S. Master Excise Tax Guide-fifth edition*, A WoltersKluwer Company, 2005.

3. 영 국

- 영국에서는 1973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17.5%의 세율이 적용
- 영국의 개별소비세는 사치세가 아니라 환경세 성격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

가. 주세

〈표 II-13〉 영국의 주세(2007년 3월 기준)

품 목	구 분	단 위	세 율
증류주	Spirits	per litre of pure alcohol	£19.56
	Spirits-based Ready to Drink	per litre of pure alcohol	£19.56
맥 주	beer	per hectolitre percent of alcohol	£13.71
과실주(사과, 배)	Still cider and perry 1.2%~7.5%	per hectolitre of product	£26.48
	Still cider and perry 7.5%~8.5%	per hectolitre of product	£39.73
	Sparkling cider and perry 1.2%~5.5%	per hectolitre of product	£26.48
	Sparkling cider and perry 5.5%~8.5%	per hectolitre of product	£172.33
와 인	wine and made wine 1.2%~4%	per hectolitre of product	£54.85
	wine and made wine 4%~5.5%	per hectolitre of product	£75.42
	wine and made wine 5.5%~15%	per hectolitre of product	£177.99
	wine and made wine 15%~22%	per hectolitre of product	£237.31
	Sparkling wine and made wine 5.5%~8.5%	per hectolitre of product	£172.33
	Sparkling wine and made wine 8.5%~15%	per hectolitre of product	£227.99

주: 1. 알콜도수 22%를 초과하는 와인은 증류주(spirits)의 세율을 적용

2. cider and perry의 알콜도수가 8.5%를 초과하면 made-wine의 세율을 적용

자료: 영국 국세청(HMRC)

http://customs.hmrc.gov.uk/channelsPortalWebApp/channelsPortalWebApp.portal?_nfpb=true&_pageLabel=pageExcise_Home

나. 담배세

〈표 II-14〉 영국의 담배세(2007년 3월 현재)

종 류	단위	세율
담배(cigarettes)	소매가격기준 22% + 1,000개당	£108.65
시가(cigars)	kg당	£158.24
손으로 만 담배(hand rolling tobacco)	kg당	£113.74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kg당	£69.57
기타담배(other smoking tobacco)	kg당	£69.57

자료: 영국 국세청(HMRC)

http://customs.hmrc.gov.uk/channelsPortalWebApp/channelsPortalWebApp.portal?_nfpb=true&_pageLabel=pageExcise_Home

다. 유류세

〈표 II-15〉 영국의 유류세(2007년 3월 현재)

용 도	구 분	단위	세율
주행용 연료 (Road fuels)	초저황 휘발유(Ultra low sulphur petrol)	ℓ당	£0.4835
	무황 휘발유(sulphur-free petrol)	ℓ당	£0.4835
	초저황 경유(Ultra low sulphur diesel)	ℓ당	£0.4835
	무황 경유(sulphur-free diesel)	ℓ당	£0.4835
	무연 휘발유(Unleaded petrol)	ℓ당	£0.5152
	기타 경유(other light oil)	ℓ당	£0.5768
	항공용 휘발유(Aviation gasoline)	ℓ당	£0.2884
	중유(Heavy oil)	ℓ당	£0.5468
할인세율 적용연료 (Rebated oils)	용광로용 경유 (light oil delivered to an approved person for use as furnace fuel)	ℓ당	£0.0729
	비주행용 가스오일 및 초저황 경유 (Marked gas oil and ultra-low sulphur diesel not for road fuel use)	ℓ당	£0.0769
	연료용 오일(Fuel oil)	ℓ당	£0.0729
	비주행용 또는 특정 운수장비용 등유 (kerosene to be used as motor fuel off-road or in an excepted vehicle)	ℓ당	£0.0769
바이오연료 (Biofuels)	바이오 경유(Biodiesel)	ℓ당	£0.2835
	바이오 에탄올(Bioethanol)	ℓ당	£0.2835
주행용 가스연료 (Road fuel gases)	천연가스(Natural Gas)	kg당	£0.1081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kg당	£0.1221

자료: 영국 국세청(HMRC)

http://customs.hmrc.gov.uk/channelsPortalWebApp/channelsPortalWebApp.portal?_nfpb=true&_pageLabel=pageExcise_Home

라. 기타

-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세(Aggregates levy): 소음(noise), 먼지(dust), 조망권침해(visual intrusion), 안락함손실(loss of amenity) 등을 야기시키는 채석행위(qurrying operations)가 부과대상
- 기후 변화세(Climate Change levy): 온실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 또는 상업용으로 공급되는 특정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
○ 과세대상: 빛, 열, 전력용으로 사용되는 연료상품(전기, 가스, 유류 등)
- 폐기물매립세(Landfill tax):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에 과세

〈표 II-16〉 영국의 기타 개별소비세 (2007년 3월 현재)

구 분	종 류	세분류	단 위	세 율
환경세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세(Aggregates levy)		ton	£1.6
	기후 변화세 (Climate change levy)	전기	kw/h	£0.00441
		가스	kw/h	£0.00154
		액화석유가스 등	kg	£0.00985
		기타	kg	£0.01201
	쓰레기 매립세 (Landfill tax)	비분해 쓰레기 (inert wastes)	ton	£2
		그 외	ton	£21

자료: 영국 국세청(HMRC)

http://customs.hmrc.gov.uk/channelsPortalWebApp/channelsPortalWebApp.portal?_nfpb=true&_pageLabel=pageExcise_Home

마. 소비세의 예시

〈표 II-17〉 영국의 소비세 예시(2005년 4월 기준)

(단위: pence)

종 류	소매가격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세금합계	세금/ 소매가격
담배 한 갑(20개피)	498	314	74	386	78%
맥주 1파인트(알콜 3.9%, 1파인트=0.57ℓ)	209	29	31	60	29%
라거 1파인트(알콜 4.1%)	228	30	34	64	28%
라거 4캔 묶음(440ml)	276	93	41	134	49%
75cl(1cl=0.01ℓ) 와인	333	126	50	175	53%
70cl(1cl=0.01ℓ) 위스키(알콜 40%)	1,171	548	174	772	62%
75cl(1cl=0.01ℓ) 보드카(알콜 40%)	1,088	550	162	712	66%
1ℓ 사과주(알콜 7.5%)	175	26	26	52	30%
초저항 휘발유 1ℓ	85	47	13	60	70%
초저항 경유 1ℓ	90	47	13	60	67%

자료: HMRC, "HM Customs and Excise 2004-05 Accounts(HC447)," 2006.

4. 캐나다

□ 캐나다에서는 일반소비세로서 세율 6%의 연방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 Tax)와 주부가가치세 PST(Provincial Sales Tax), 또는 세율 14%의 HST(Harmonized Sales Tax)가 있으며, 일부 개별 소비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Excise duty and Excise Tax)를 부과

□ HST(Harmonized Sales Tax)는 GST와 PST가 통합된 형태로 Nova Scot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주에서 실시

○ 이들 주에서는 별도의 PST를 부과하지 않음. HST에 부과되는 14%의 세율 가운데 6%는 연방정부, 나머지 8%는 주정부에 귀속

○ HST의 과세대상 및 면제 기준은 모두 GST에 근거하여 계산

○ PST의 세율 예: Quebec주 - 7.5%

Alberta주 - 부과하지 않음.

- 연방 개별소비세의 경우 Excise duty는 ‘The Excise Act 2001’에 의거하여 주류와 담배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Excise Tax는 ‘The Excise Tax Act’에 의거하여 유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과세

가. 주세

〈표 II-18〉 캐나다의 주세(2006년 7월 현재)

종 류	구 분	단 위	세 율
증류주 (spirits)	완전에틸알콜 7% 미만	ℓ	\$0.295
	완전에틸알콜 7% 이상	ℓ	\$11.696
	특별세율(수입제품)	ℓ	\$0.12
와인	완전에틸알콜 1.2% 미만	ℓ	\$0.0205
	완전에틸알콜 1.2%~7%	ℓ	\$0.295
	완전에틸알콜 7% 이상	ℓ	\$0.62
맥주	국내에서 연간 300,000헥토리터 이상 제조하거나 모든 수입맥주	완전에틸알콜 1.2% 미만	\$2,591/hℓ
		완전에틸알콜 1.2%~2.5%	\$15.61/hℓ
		완전에틸알콜 2.5% 이상	\$31.22/hℓ
	소규모 국내제조 (완전에틸알콜 1.2% 이하)	생산량 0~2,000헥토리터	\$0.259/hℓ
		생산량 2,001~5,000헥토리터	\$0.518/hℓ
		생산량 5,001~15,000헥토리터	\$1.036/hℓ
		생산량 15,001~50,000헥토리터	\$1.814/hℓ
		생산량 50,001~75,000헥토리터	\$2.202/hℓ
		생산량 75,001~300,000헥토리터	\$2.591/hℓ
	소규모 국내제조 (완전에틸알콜 1.2%~2.5%)	생산량 0~2,000헥토리터	\$1.561/hℓ
		생산량 2,001~5,000헥토리터	\$3.122/hℓ
		생산량 5,001~15,000헥토리터	\$6.244/hℓ
		생산량 15,001~50,000헥토리터	\$10.927/hℓ
		생산량 50,001~75,000헥토리터	\$13.269/hℓ
		생산량 75,001~300,000헥토리터	\$15.61/hℓ
	소규모 국내제조 (완전에틸알콜 2.5% 이상)	생산량 0~2,000헥토리터	\$3.122/hℓ
		생산량 2,001~5,000헥토리터	\$6.244/hℓ
		생산량 5,001~15,000헥토리터	\$12.488/hℓ
		생산량 15,001~50,000헥토리터	\$21.854/hℓ
		생산량 50,001~75,000헥토리터	\$26.537/hℓ
		생산량 75,001~300,000헥토리터	\$31.22/hℓ

자료: 캐나다 국세청, *Excise Duty Notice 9*.

나. 담배세

〈표 II-19〉 캐나다의 담배세(2006년 7월 현재)

종류	단위	세율	부가세(surtax)
담배(cigarettes)	5개	\$0.41025	n/a
담배스틱 (tobacco sticks)	스틱당	\$0.0605	n/a
기타제조담배	kg	\$55.90	n/a
담배잎	kg	\$1,572	n/a
시가	1,000개	\$16.60	소매가격의 66%

자료: 캐나다 국세청, *Excise Duty Notice 9*.

다. 유류세

〈표 II-20〉 캐나다의 유류세(2006년 8월 현재)

종 류	단위	세율
유연 휘발유	ℓ	11센트
유연 항공용 휘발유	ℓ	11센트
무연 휘발유	ℓ	10센트
무연 항공용 휘발유	ℓ	10센트
경유연료	ℓ	4센트
항공용 연료	ℓ	4센트

자료: 캐나다 국세청(www.cra-arc.gc.ca/E/pub/et/currates/README.html), "Current Rates of Excise Taxes."

라. 자동차소비세

□ 2,007kg 초과 자동차와 2,268kg 초과 쥘차(wagon)와 밴(van)에 부과

〈표 II-21〉 캐나다의 자동차소비세(2006년 8월 현재)

종 류	단 위	세 율
자동차세	초과되는 중량이 45kg을 넘지 않는 경우	\$30
	초과되는 중량이 45~90kg	\$30+\$40
	초과되는 중량이 90~135kg	\$30+\$40+\$50
	초과되는 중량이 135kg을 넘는 경우 (비례적으로 증가)	\$30+\$40+\$50+\$60
자동차에 이용되는 에어컨		\$100

자료: 캐나다 국세청(www.cra-arc.gc.ca/E/pub/et/currates/README.html), "Current Rates of Excise Taxes."

5. 일 본

- 일본의 소비세는 세율 5%의 소비세(부가가치세)와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등의 개별소비세로 구성
 - 개별소비세(국세): 주세, 담배세, 특별담배세, 휘발유세, 석유가스세, 항공연료세, 석유 및 석탄세, 지방도로세, 자동차톤세, 전기세 등
 - 개별소비세(지방세): 지방담배세, 골프코스 이용세, 온천세 등

가. 주세

- 주세의 과세체계는 종량세 구조
 - 1989년 세법개정시 종가세(ad valorem tax)와, 사케와 위스키의 등급제(grading system) 폐지

〈표 II-22〉 일본의 주세 (2006년 3월 현재)

품 목	구 분	단 위	세 율
발포성 주류 (Sparkling Alcohol Drinks)	맥주 등(beer etc.)	kl당	¥220,000
	맥아비율 25~50%인 맥주	kl당	¥178,125
	맥아비율 25% 이하인 맥주	kl당	¥134,250
	홉으로 만들지 않은 기타 주류 (others except hop-based liquors)	kl당	¥80,000
양조주 (Fermented Liquor)	일반 양조주	kl당	¥140,000
	정제된 사케(Refined sake)	kl당	¥120,000
	와인(Wine)	kl당	¥80,000
소주 (Shochu)	일반 소주	kl당	¥200,000
		알콜도수 20% 초과 시 1% 증가당	¥10,000
	위스키, 브랜디, 스피리츠 (Whisky, Brandy, Spirits)	kl당	¥370,000
		알콜도수 37% 초과 시 1% 증가당	¥10,000
기타주류 (Miscellaneous liquor)	일반 기타주류	kl당	¥220,000
		알콜도수 20% 초과 시 1% 증가당	¥11,000
	혼합 사케(Sake compound)	kl당	¥100,000
	미린(Mirin)	kl당	¥20,000
	과실주 및 리큐르 (Sweet wine or Liqueur)	kl당	¥120,000
		알콜도수 12% 초과 시 1% 증가당	¥10,000
	분말주류(Powdered Liquor)	kl당	¥390,000

자료: 일본 재무성, *Comprehensive Handbook of Japanese Taxes 2006*.

나. 담배세

- 일본의 담배세는 국세 담배세와 담배특별세(special tobacco tax), 지방 담배세로 구성

〈표 II-23〉 일본의 담배세(2006년 3월 현재)

종 류	단위	국세	특별담배세	도부현세	시정촌세	계
담배(Cigarettes)	1,000개당	¥3,552	¥820	¥1,074	¥3,298	¥8,744
파이프담배 (Pipe tobacco)	1,000개당	¥3,552	¥820	—	—	¥4,372
시가(Cigars)	1,000개당	¥3,552	¥820	—	—	¥4,372
각초, 씹는담배, 코담배 (Cut, chewing, snuff)	1,000개당	¥3,552	¥820	—	—	¥4,372

자료: 일본 재무성, *Comprehensive Handbook of Japanese Taxes 2006*.

다. 석유류세

〈표 II-24〉 일본의 석유류세 (2006년 3월 현재)

구 분			단위	세율
휘발유(Gasoline)			kl당	₩48,600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kg당	₩17.5
항공용 연료(Aviation fuel)			kl당	₩26,000
석유 및 석탄	원유, 수입된 석유(Crude Petroleum)		kl당	₩2,040
	천연가스	Natural gas	ton당	₩1,080
		Gaseous Hydrocarbon	ton당	₩1,080
	석탄(Coal)		ton당	₩700

주: 1. 휘발유는 15℃에서 중량이 0.8017를 초과하지 않는 Hydrocarbon oil로 정의

2. 액화석유가스 1ℓ는 0.56kg에 해당

3. 휘발유에는 국세인 지방도로세(Local Road Tax)가 ¥5,200/kℓ당이 추가

자료: 일본 재무성, *Comprehensive Handbook of Japanese Taxes 2006*.

라. 기타

1) 자동차톤세(Motor Vehicle Tonnage Tax)

□ 자동차의 검사인증(inspection certificate) 또는 등록(registration number is obtained)시에 과세

○ 자동차세 수입의 2/3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1/3은 지방정부에 귀속

〈표 II-25〉 일본의 자동차토세(2006년 3월 현재)

구 분	종 류	단 위	세 율
Case 1. 3년 검사인증 (Inspection certificate) 차량	승용차량(경차 제외) Private passenger vehicles	중량 0.5톤 이하	¥18,900
		중량 0.5톤 초과	¥18,900+초과된 중량 비례계산
	경차(Light motor vehicles)		¥13,200
	오토바이(Motorcycle)	개인용	¥5,100
		사업용	¥7,500
Case 2. 2년 검사인증 (Inspection certificate) 차량	승용차량 Private passenger vehicles		중량 0.5톤 이하 ¥12,600
			중량 0.5톤 초과 ¥12,600+초과된 중량 비례계산
	크레인 등 차량 (승용차, 경차, 오토바이 제외)	개인용	중량 1톤 이하 ¥12,600
			중량 1톤 초과 ¥12,600+초과된 중량 비례계산
		사업용	중량 1톤 이하 ¥5,600
			중량 1톤 초과 ¥5,600+초과된 중량 비례계산
	2.5톤 이하 트럭	개인용	중량 1톤 이하 ¥8,800
			중량 1톤 초과 ¥8,800+초과된 중량 비례계산
		사업용	중량 1톤 이하 ¥5,600
			중량 1톤 초과 ¥5,600+초과된 중량 비례계산
	오토바이	개인용	¥5,000
		사업용	¥3,400
	경차	개인용	¥8,800
		사업용	¥5,600
Case 3. 1년 검사인증 (Inspection certificate) 차량	택시와 영업용 승용차 Taxis and hired cars		중량 0.5톤 이하 ¥2,800
			중량 0.5톤 초과 ¥2,800+초과된 중량 비례계산
	트럭과 버스	개인용	중량 1톤 이하 ¥6,300
			중량 1톤 초과 ¥6,300+초과된 중량 비례계산
		사업용	중량 1톤 이하 ¥2,800
			중량 1톤 초과 ¥2,800+초과된 중량 비례계산
	오토바이	개인용	¥2,500
		사업용	¥1,700
Case 4. 검사인증이 필요없는 경차	2륜경차(Two- wheeled)	개인용	¥6,300
		사업용	¥4,500
	기타경차	개인용	¥13,200
		사업용	¥8,400

주: 경차는 판단기준인 실린더 용량(660cc 이하), 길이(3.4m 이하), 폭(1.48m 이하), 높이(2m 이하)를 모두 충족시켜야 함(2륜경차(two-wheeled)는 별도기준 적용).
자료: 일본 재무성, *Comprehensive Handbook of Japanese Taxes 2006*.

2) 전기세(Promotion of Power-Resources Development Tax)

〈표 II-26〉 일본의 전기세 (2006년 3월 현재)

품 목	단 위	세 율
전력(Electric power sold)	1000kw/h	¥375

자료: 일본 재무성, *Comprehensive Handbook of Japanese Taxes 2006*.

3) 기타 지방소비세

〈표 II-27〉 일본의 기타 지방소비세 (2006년 3월 현재)

품 목	단 위	세 율
골프코스 이용세 (Golf course utilization tax)	1일 1인	¥800
온천세(Bathing tax)	1일 1인	¥150

자료: 일본 재무성, *Comprehensive Handbook of Japanese Taxes 2006*.

6. 대 만

□ 대만의 소비세는 세율 5%의 부가가치세와 상품세(commodity tax), 담배와 주세로 구성

○ 지방세 중 소비세는 유흥세(Amusement tax)가 있으며 영화와 각종 공연에 부과

가. 주세

〈표 II-28〉 대만의 주세(2006년 1월 현재)

구분		단위	세율
양조주(brewed)	맥주	ℓ	NT\$ 26
	기타양조주	ℓ당 알콜도수	NT\$ 7
증류주(Distilled spirits)		ℓ	NT\$ 185
재가공주 (Reprocessed alcoholic beverages)		알콜도수 20% 미만, ℓ당	NT\$ 7
		알콜도수 20% 초과, ℓ당	NT\$ 185
쌀술(Rice spirits)		ℓ	NT\$ 185
요리용술(cooking alcoholic beverages)		ℓ	NT\$ 22
기타주류		ℓ당 알콜도수	NT\$ 7
에틸알콜		ℓ	NT\$ 11

자료: Taxation and Tariff Committee, Ministry of Finance, The Republic of China, Guide to ROC Taxes 2006.

나. 담배세

〈표 II-29〉 대만의 담배세(2006년 1월 현재)

	국 세		건강 및 복지 부담금 (Health and Welfare Surcharge)	
	단위	세율	단위	세율
담배(Cigarettes)	1,000개	NT\$ 590	1,000개	NT\$ 250
시가(Cigars)	kg	NT\$ 590	kg	NT\$ 250
자른담배 (Cut Tobacco)	kg	NT\$ 590	kg	NT\$ 250
기타	kg	NT\$ 590	kg	NT\$ 250

자료: Taxation and Tariff Committee, Ministry of Finance, The Republic of China, Guide to ROC Taxes 2006.

다. 유류세

〈표 II-30〉 대만의 유류세(2006년 1월 현재)

종 류	단 위	세 율
휘발유	kl	NT\$ 6,830
경유	kl	NT\$ 3,990
등유	kl	NT\$ 4,250
항공유	kl	NT\$ 610
연료유(fuel oils)	kl	NT\$ 110
용제(Dissolving oils)	kl	NT\$ 720
액화석유가스(Liquified Petroleum Gas)	MT(=1,000kg)	NT\$ 690

주: 경제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50%의 범위에서 특별세율을 가감할 수 있음.

자료: Taxation and Tariff Committee, Ministry of Finance, The Republic of China, Guide to ROC Taxes 2006.

라. 기타

〈표 II-31〉 대만의 기타 소비세(2006년 1월 현재)

	종 류	단 위	세 율
고무타이어	버스, 트럭용	가격	10%
	기타	가격	10%
시멘트	흰색 또는 컬러 시멘트	MT	NT\$ 600
	포틀랜드 I 시멘트	MT	NT\$ 320
	포틀랜드 용광로 강재 시멘트	MT	NT\$ 196
	기타	MT	NT\$ 440
음료수	희석 자연 과일 야채주스	가격	8%
	기타 자동공정 생산 청량음료	가격	15%
보통판유리	flat-glass	가격	10%
전자제품	냉장고	가격	13%
	컬러텔레비전	가격	13%
	에어컨	가격	20%
	제습기(Dehumidifiers)	가격	15%
	비디오	가격	13%
	카세트(Record players)	가격	10%
	녹음기	가격	10%
	전축(stereophonic systems)	가격	10%
	전자오븐	가격	15%
차량	9인승 이하 세단	2,000cc 이하	25%
		2,000cc 초과	35%
	트럭, 버스, 기타차량	가격	15%
	오토바이	가격	17%

자료: Taxation and Tariff Committee, Ministry of Finance, The Republic of China, Guide to ROC Taxes 2006.

마. 유흥세(amusement tax)

〈표 II-32〉 대만의 유흥세(2006년 1월 현재)

구 분	최고세율
영화(자국어)	30%
영화(외국어)	60%
가수의 공연, 댄스 공연, 서커스, 마술쇼, 나이트클럽 공연 등	30%
드라마, 음악공연, 아마추어 댄스공연 등	5%
모든 종류의 콘테스트	10%
댄스장	100%
당구장	50%
볼링장	30%
골프장	20%
기타 레크레이션 활동	50%

자료: Taxation and Tariff Committee, Ministry of Finance, The Republic of China, Guide to ROC Taxes 2006.

7. 홍 콩

□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술, 담배, 석유류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에 관계없이 소비세를 과세

가. 주세

〈표 II-33〉 홍콩의 주세(2007년 2월 현재)

종 류	단 위	세 율
증류주(Liquor)	알콜도수 30% 미만	가격 20%
	알콜도수 30% 이상	가격 100%
와인	가격	40%
메틸알콜 및 메틸알콜 포함	알콜도수 30% 미만	헥토리터 HK\$ 840
	알콜도수 30% 이상 시 추가적으로	1% 증가당 HK\$ 28.1

주: 알콜도수는 온도 20℃에서 측정

자료: The Government of the hong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ustom and Excise Department(www.customs.gov.hk)

나. 담배세

〈표 II-34〉 홍콩의 담배세(2007년 2월 현재)

종 류	단 위	세 율
담배	1,000개	HK\$ 804
시가	kg	HK\$ 1,035
중국용담배(Chinese Prepared tobacco)	kg	HK\$ 197
기타담배	kg	HK\$ 974

자료: The Government of the hong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ustom and Excise Department(www.customs.gov.hk)

다. 석유류세

〈표 II-35〉 홍콩의 석유류세(2007년 2월 현재)

종 류	단 위	세 율
항공용	ℓ	HK\$ 6.51
경경유(light diesel)	ℓ	HK\$ 2.89
자동차용 휘발유(Leaded petrol)	ℓ	HK\$ 6.82
자동차용 무연휘발유(unleaded petrol)	ℓ	HK\$ 6.06
초저황경유(ultra low sulphur diesel)	ℓ	HK\$ 1.11

자료: The Government of the hong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ustom and Excise Department(www.customs.gov.hk)

8. 중 국

- ☐ 중국의 소비세는 세율 17%의 증치세(부가가치세)와, 11개 세목 27개 과세항목의 개별소비세로 구성

가. 주세

〈표 II-36〉 중국의 주세(2006년 상반기 현재)

종류	단위	세율
糧食 및 庶類 백주	斤(근)당, 가격당	근당 0.5元 + 출고가격 20%
황주	톤당	240元
갑류맥주	톤당	250元
을류맥주	톤당	220元
기타주	가격	10%
주정	가격	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2006.

나. 담배세

〈표 II-37〉 중국의 담배세(2006년 상반기 현재)

종류	단위	세율
갑류필련	표준상자당, 가격당	상자당 150元 + 판매액 45%
을류필련	표준상자당, 가격당	상자당 150元 + 판매액 30%
雪茄烟(필련)	가격	25%
시가(cigar)	가격	30%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2006.

다. 석유류세

〈표 II-38〉 중국의 석유류세(2006년 상반기 현재)

종 류	단위	세율
무연휘발유	ℓ	0.20元
유연휘발유	ℓ	0.28元
경유유	ℓ	0.10元
나프타	ℓ	0.20元
溶劑유	ℓ	0.20元
윤활유	ℓ	0.20元
연료유	ℓ	0.10元
항공유	ℓ	0.10元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2006.

라. 기타 소비세

〈표 II-39〉 중국의 기타 소비세 (2006년 상반기 현재)

종 류		단 위	세 율
자동차	승용차(9인승 미만)	배기량 1.5ℓ 미만	차량가격 3%
		배기량 1.5~2.0ℓ	차량가격 5%
		배기량 2.0~2.5ℓ	차량가격 9%
		배기량 2.5~3.0ℓ	차량가격 12%
		배기량 3.0~4.0ℓ	차량가격 15%
		배기량 4.0ℓ 미만	차량가격 20%
	중·경형 상용객차(10~23인승)	가격	5%
오토바이		배기량 250cc 미만	차량가격 3%
		배기량 250cc 초과	차량가격 10%
자동차타이어		가격	30%
화장품, 고급피부·모발보호용품		가격	30%
귀중품 및 보석류	금·은 장신구, 다이아몬드 및 동 장신구	가격	10%
	기타 귀금속류, 보석류	가격	5%
골프공 및 용품 등		가격	10%
고급 손목시계		가격	10%
요트		가격	10%
1회용 나무젓가락		가격	5%
원목 바닥재(마루)		가격	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2006.

Ⅲ. 각국의 주요 개별소비세 품목 비교

1. 주세의 국제비교

가. 맥주

〈표 III-1〉 맥주 주세의 국제비교(2005년 1월 현재)

국가명	100리터 · 당도당 (per degree Plato)		100리터 · 알콜 1도당 (per degree alc.)		VAT 세율(%)	저알콜주(알콜도수 2,8% 이하) 100리터당		다른 요소에 대한 과세여부	
	각국 화폐	미국달러	각국 화폐	미국달러		각국 화폐	미국달러	알콜도수 누진세율	소규모생산에 대한 저율과세
호주	각주		각주		10			○	○(각주)
오스트리아	2,08	2,29			20			×	○
벨기에	1,71	1,94			21			×	○
캐나다			27,99	22,04	7 or 15	각주		○	×
체코공화국	24	1,64			19			×	○
덴마크			58,4	6,90	25			×	○
핀란드			19,45	20,78	22	16,8	1,79	×	○
프랑스			2,6	2,90	19,60	1,3	1,45	×	×
독일	0,79	0,84			16			×	○
그리스	1,13	1,62			18			×	×
헝가리	420	3,33			25			×	×
아이슬랜드			5,87	65,15	24,5			×	×
아일랜드			19,87	19,67	21	각주		×	○
이탈리아	1,59	1,9			20			×	×
일본			각주		5			×	×
한국	각주		각주		10	각주		×	×
룩셈부르크	0,79	0,8			15	0,79	0,8	×	○
멕시코			25%		15			○	×
네덜란드	2,1	2,29			19			○	○
뉴질랜드			각주		12,5	각주		×	×
노르웨이			각주		25	각주		○	×
폴란드	6,86	1,69			22			×	○
포르투갈			각주		19	6,19	3,38	○	○
슬로바키아공 화국	50	2,91			19			×	○
스페인	각주				16			○	×
스웨덴			147	15,77	25 or 12			×	×
스위스	24,75	13,98	각주		7,6	각주		×	×
터키			23,8	30,51	18			×	×
영국			12,59	20,34	17,5			×	○
미국			21	21				×	○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6.

호주: 알콜도수 1.15% 이하는 비과세, 1.15%를 초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과세

구 분	알콜 함량	세율(호주달러)
48ℓ 미만의 맥주를 판매하는 개인	3% 미만	AUD 39.40/ℓ
	3% 이상~3.5% 미만	AUD 35.53/ℓ
48ℓ 이상의 맥주를 판매하는 개인	3% 미만	AUD 6.09/ℓ
	3% 이상~3.5% 미만	AUD 19.12/ℓ
	3.5% 이상	AUD 25.02/ℓ

캐나다: hl(100리터)당 알콜도수 1.2% 미만시 CAD 2,591, 1.2~2.5%는 CAD 13.99, 2.5% 초과시 CAD 27.985를 적용

아일랜드: 소비세율 1.2%를 적용

일본: hl(100리터)당 엔화 22,200의 세율을 적용

한국: 세율 72%의 주세와 주세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과

뉴질랜드: 주세율은 알콜도수의 리터 기준으로 과세

알콜도수	세율(뉴질랜드 화폐단위)
1.15% 미만	비과세
1.15% 이상~2.5% 미만	NZD 32,465
2.5% 이상	NZD 21,647

노르웨이: 주세율은 알콜도수의 hl(100리터) 기준으로 과세

알콜도수	세율(노르웨이 화폐단위)
0.00%~0.70% 미만	NOK 155
0.70% 이상~2.75% 미만	NOK 243
2.75% 이상~3.75% 미만	NOK 918
3.75% 이상~4.75% 미만	NOK 1,589
7% 이상	NOK 355

포르투갈: 일반적인 주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다만, 소규모 양조업자(연간 생산량 200,000hl 미만)의 경우 정상세율의 50%를 감면

알콜도수와 당분	세율
0.5% 이상~1.2% 미만	EUR 6.19
1.2% 이상, 당분 8 미만	EUR 7.76
1.2% 이상, 당분 8 이상~11 미만	EUR 12.39
1.2% 이상, 당분 11 이상~13 미만	EUR 15.52
1.2% 이상, 당분 13 이상~15 미만	EUR 18.59
1.2% 이상, 당분 15 이상	EUR 21.75

스페인: 알콜도수가 1.2%를 초과하지 않는 맥주에 대해 비과세

알콜도수	세율
1.2% 이상~2.8% 미만	EUR 2.32/hl
2.8% 이상, 당분 11 미만	EUR 5.34/hl
2.8% 이상, 당분 11 이상~15 미만	EUR 8.38/hl
2.8% 이상, 당분 15 이상~19 미만	EUR 11.43/hl
2.8% 이상, 당분 19 이상	EUR 0.77/당분(hl기준)

* 북아프리카지역의 스페인령 Ceuta와 Mellila의 경우 비과세

스위스: 알콜도수 0.5~15.0%의 모든 맥주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

나. 와인

〈표 III-2〉 와인 주세의 국제비교(2005년 1월 현재)

국가명	일반와인(still wine)			발포성와인(sparkling wine)			저알콜와인(알콜도수 8.5%미만)		
	100리터당		VAT(%)	100리터당		VAT(%)	100리터당		VAT(%)
	각국 화폐	미국 달러		각국 화폐	미국 달러		각국 화폐	미국 달러	
호주	각주		10	각주		10	각주		10
오스트리아			20	144	158.59	20			20
벨기에	47.1	53.34	21	161.13	182.48	21	14.87	16.84	21
캐나다	51.22	40.33	7 or 15	51.22	40.33	7 or 15	각주		7 or 15
체코공화국			19	2,340	160.27	19			19
덴마크	705	83.33	25	1,055	124.7	25	450	53.19	25
핀란드	212	226.5	22	212	226.5	22	각주		22
프랑스	3.4	3.79	19.6	8.4	9.36	19.6			19.6
독일			16	136	144.83	16			16
그리스			18			18			18
헝가리	800	6.35	25	9,120	72.38	25	800	6.35	25
아이슬랜드	52,800	586.02	24.5	51,480	571.37	24.5	각주		24.5
아일랜드	273	270.3	21	546.01	546.6	21	90.98	90.98	21
이탈리아			20			20			20
일본	7,047.2	52.99	5	7,047.2	52.99	5			5
한국	30%		10	30%		10	30%		10
룩셈부르크			12 or 15			12 or 15			12 or 15
멕시코	25%/30%		15	25%/30%		15	25%		15
네덜란드	59.02	64.22	19	201.24	218.98	19	29.51	32.11	19
뉴질랜드	각주		12.5	각주		12.5	각주		12.5
노르웨이	4,332	456.96	25	4,332	456.96	25	각주		25
폴란드	136	32.85	22	136	32.85	22			22
포르투갈			12			12			12
슬로바키아 공화국			19	2,400	139.53	19	1,700	98.84	19
스페인			16			16			16
스웨덴	2,208	236.91	25	2,208	236.91	25	각주		25
스위스			7.6			7.6			7.6
터키	328	420.51	18	1,121.2	1,437	18	328	420.51	18
영국	163.47	264.09	17.5	220.54	356.28	17.5			17.5
미국	46	46		113	113		각주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6.

호주: 증류, 발포성, 저알콜주 간의 세율 차이는 없음. 모든 와인에 대하여 Goods and Services Tax(GST)의 세율 10%와 Wine Equalisation Tax(WET)를 과세함.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하던 매상세의 세율 41%의 세율과 GST의 세율 10%의 차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WET를 도입하여 이후에는 29%의 세율을 적용함. WET는 에탄 알코올의 함량이 1.15% 이상인 포도주와 마랄라, 베르뭇, 와인카테일과 크림 등의 포도주 제품과 과실주 또는 야채주 및 사이다, 페리주, 발효주 및 셰이크 등에 적용함. 2004년 10월 1일부터 AUD 1백만달러의 생산량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으며, 주정부는 셀러도어(cellar door)의 판매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의 환급 및 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음.

캐나다: 주세율은 리터당 적용

에탄올 알콜도수	세율(캐나다 화폐단위)
1.2% 미만	CAD 0.0205
1.2% 이상~7% 미만	CAD 0.2459
7% 이상	CAD 0.5122

핀란드: 알콜도수가 낮은 와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

에탄올 알콜도수	세율
1.2% 이상~2.8% 이상	EUR 4.54
2.8% 이상~5.5% 미만	EUR 103
5.5% 이상~8.0% 미만	EUR 152

아이슬랜드: 표에 있는 세율은 알콜도수 12% 기준 세율임. 알콜도수 2.25%를 초과하는 경우 알콜도수마다 ISK 5,280의 세율을 적용

뉴질랜드: 포도주 100리터당 NZD 216.47

노르웨이: 표의 와인세율은 알콜도수가 12% 기준 세율임. 알콜도수가 4.76~22%인 와인은 100리터 기준으로 알콜도수당 NOK 355의 세율을 적용

스웨덴: 와인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발포성와인을 별도로 취급하지는 않음.

에탄올 알콜도수	세율
2.25% 이상~4.5% 미만	SEK 758
4.5% 이상~7% 미만	SEK 1,120
7% 이상~8% 미만	SEK 1,541

미국: 주류에 대한 가중평균한 연방 및 주세율은 알콜도수가 14% 미만인 경우 100리

터당, 일반와인은 \$45, 발포성 와인 \$113을 적용

연방세율은 갤런당 세율을 적용. (1hl=26.42gallon)

알콜도수	세율
14% 미만	USD 1.07/gallon
14% 이상~21% 미만	USD 1.57/gallon
21% 이상~24% 미만	USD 3.15/gallon
탄산와인	USD 3.30/gallon
발포성와인	USD 3.40/gallon

다. 맥주와 와인 외의 주류

〈표 Ⅲ-3〉 기타 주류에 대한 주세의 국제비교(2005년 1월 현재)

국가명	완전알콜(absolute alcohol) 100리터당 종량세율			
	개별소비세		VAT(%)	소규모 생산자 경감세율 여부
	각국 화폐	미국달러		
호주	각주		10	×
오스트리아	1,000	1,101.32	20	○
벨기에	1,660.89	1,880.96	21	×
캐나다	1,106.6	871.34	7 or 15	×
체코공화국	26,500	1,815.07	19	×
덴마크	15,000	1,773.05	25	×
핀란드	2,825	3,018.16	22	×

〈표 III-3〉의 계속

국가명	완전알콜(absolute alcohol) 100리터당 종량세율			
	개별소비세		VAT(%)	소규모 생산자 경감세율 여부
	각국 화폐	미국달러		
프랑스	1,450	1,616.5	19.6	×
독일	1,303	1,387.65	16	○
그리스	908	1,302.73	18	×
헝가리	192,000	1,523.81	25	×
아이슬랜드	70,780	785.57	24.5	×
아일랜드	3,925	3,886.14	21	×
이탈리아	730.87	871.12	20	×
일본	각주		5	×
한국	각주		10	×
룩셈부르크	1,041.14	1,058.07	15	×
멕시코	50%		15	×
네덜란드	1,775	1,931.45	19	×
뉴질랜드	각주		12.5	×
노르웨이	54,400	5,843.88	25	×
폴란드	4,550	1,099.03	22	×
포르투갈	916.08	500.59	19	○
슬로바키아공화국	25,000	1,453.49	19	×
스페인	754.77	982.77	16	○
스웨덴	50,141	5,379.94	25	×
스위스	2,900	1,638.42	7.6	×
터키	7,092.6	9,093.08	18	×
영국	1,956	3,159.94	17.5	×
미국	923	923		×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6.

호주: 브랜디, 위스키, 럼주 및 그 밖의 알콜도수가 10% 이상인 경우 리터당 AUD 57.97의 세율을 적용

알콜도수 10% 미만인 경우에는, 브랜디 AUD 54.13/리터의 세율을 적용

그 밖의 증류주에는 AUD 34.22/리터의 세율을 적용

일본:

알콜도수	세율(일본 화폐단위)
위스키와 브랜디(40%)	JPY 40,900
주정(37%)	JPY 36,718
감류, 올류의 소주(25%)	JPY 24,810

뉴질랜드:

알콜도수(헥토리터당)	세율(뉴질랜드 화폐단위)
알콜도수 0~14%	NZD 2,259.20
알콜도수 14% 초과	NZD 4,114.60

2. 담배세의 국제비교

□ 표면적으로 담배에 대한 세금은 건강을 이유로 부과

○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가보다 담배의 세금이 높음

□ 담배세의 특징은 많은 국가, 특히 EU에서 종량세와 종가세의 혼합세 체계를 많이 채택

캐나다: 1,000개당 CAD 65 이상인 시가에는 소매가격 65%의 세율을 추가 과세

일본: 담배세는 국세, 도세, 지방세로 구성됨

뉴질랜드: 실제 담배 내용물이 0.8kg 미만이면 NZD 270.09, 0.8kg 이상이면 시가 세율인 NZD 337.62/kg을 적용

미국: 주별로 차이가 있음. 연방과 주의 담배 소비세의 평균은 1,000개당 \$64 수준

※ 담배 가격구조의 국제비교(Most Popular Price Category)

□ EU의 담배세 과세체계의 특징

○ EU 각국의 담배세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혼합세 체계로 구성

○ EU 각국의 담배세는 EU 규정(EU Directives)에 의거하여 책정하되, 종가세율 및 종량세율은 EU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

○ EU 담배세 기준

- 담배세의 세율은 시장에서 판매비중이 가장 높은 담배제품군이 속한 가격대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
- 담배세의 총부담이 소비자가격 대비 최소 57%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
- 담배세 중 종량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와 담배세 부담 총액 대비 5~55%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함.

□ 동일한 브랜드가 아닌 각국별로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를 선정하여 비교함

〈표 III-4〉 담배세의 국제비교(2005년 1월 현재)

	담배(cigarettes)				시가(cigars)				말아피는 담배(rolling tobacco)			
	1,000개당		세금 비중 (%)	VAT 세율	1,000개당		세금 비중 (%)	VAT (%)	1,000개당		세금 비중 (%)	VAT 세율
	각국 화폐	미국 달러			각국 화폐	미국 달러			각국 화폐	미국 달러		
호주	225.53	163.16		10	225.53	163.16		10	279.41	203.95		10
오스트리아	21.38	23.55	42	20			13	20			47	20
벨기에	19.86	22.5	45.84	21			5	21			37.55	21
캐나다	79.25	62.4		7 or 15	14.79	11.65	주석	7 or 15	54	42.52		7 or 15
체코공화국	480	32.88	23	19	440	30.14	5	19	600	41.1	7	19
덴마크	489.2	57.83	21.22	25	198	23.4	10	25	452.5	53.49		25
핀란드	15.13	16.16	50	22			22	22	3.62	3.87	50	22
프랑스	7.5	8.36	58	19.6			27.57	19.6			58.57	19.6
독일	75.6	80.51	24.82	16	14	14.91	1.4	16	30.55	32.53	17.94	16
그리스	4.91	7.04	53.86	18			26	18			59	18
헝가리	4,200	33.33	18	25			25	25			32	25
아이슬랜드	11,423	126.78	47.31	24.5	11,423	126.78	44.56	24.5	8,170	90.68	44.56	24.5
아일랜드	133.39	132.07	18.32	21	196.41	194.47		21	165.34	163.7		21
이탈리아			58.5	20			23	20			56	20
일본	7,892	59.34		5	7,892	59.34		5	7,892	59.34		5
한국	48,075	62.11		10	98,100	126.74		10	34,500	44.57		10
룩셈부르크	11.89	12.08	45.84	15			5	15			31.50	15
멕시코			110	15			20.90	15			20.90	15
네덜란드	67.21	73.13	20.56	19			5	19	28.13	30.61	14.60	19
뉴질랜드	주석			12.50	주석			12.50	337.62	226.59		12.50
노르웨이	1,810	190.93		25	1,810	190.93		25	1,810	190.93		25
폴란드	68.35	16.51	28.48	22	134	32.37		22	46.53	11.24	19.39	22
포르투갈	46.33	25.32	23	19			12	19			36	19
슬로바키아 공화국	910	52.91	20	19	1,400	81.40		19	1,350	78.49		19
스페인	4.20	5.47	54.95	16			12.71	16			38.46	16
스웨덴	200	21.46	39.2	25	560	60.09		25	630	67.6		25
스위스	89.04	50.31	75	7.6	2.6/12.1	0.5/6.8		7.6	155/10	0.9/5.6		7.6
터키	0.06	0.08	58	18	0.06	0.08	58	18	0.06	0.08	58	18
영국	99.8	161.23	22	17.5	145.35	234.81		17.5	104.47	168.77		17.5
미국	주석				주석				주석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6.

〈표 III-5〉 담배가격 구조의 국제비교(2007년 2월 현재)

국가	소매가격	종량세	종가세	부가가치세	총세금	세금/가격
오스트리아	2.36	0.33	1.01	0.39	1.73	73.6%
벨기에	2.69	0.22	1.41	0.47	2.09	77.7%
불가리아	0.90	0.10	0.43	0.15	0.68	76.2%
시프러스	1.92	0.28	0.86	0.25	1.39	72.1%
체코	1.08	0.36	0.27	0.17	0.80	74.2%
덴마크	2.85	1.15	0.39	0.57	2.11	74.0%
에스토니아	0.84	0.24	0.22	0.13	0.58	69.5%
핀란드	2.76	0.20	1.38	0.50	2.08	75.4%
프랑스	3.37	0.20	1.95	0.55	2.71	80.4%
독일	3.17	1.11	0.80	0.51	2.42	76.4%
그리스	1.89	0.07	1.02	0.30	1.39	73.5%
헝가리	1.26	0.39	0.35	0.21	0.94	75.0%
아일랜드	4.75	2.04	0.84	0.82	3.71	78.1%
이탈리아	2.22	0.08	1.22	0.37	1.67	75.1%
라트비아	0.42	0.16	0.08	0.07	0.31	72.6%
리투아니아	0.73	0.19	0.11	0.11	0.41	55.6%
룩셈부르크	2.05	0.21	0.97	0.27	1.45	70.6%
말타	2.43	0.23	1.25	0.37	1.85	76.1%
네덜란드	2.69	0.98	0.55	0.43	1.97	73.0%
폴란드	0.99	0.26	0.31	0.18	0.75	76.2%
포르투갈	2.02	0.79	0.47	0.35	1.60	79.2%
루마니아	0.88	0.23	0.25	0.14	0.63	71.4%
슬로바키아	1.61	0.43	0.37	0.26	1.06	65.8%
슬로베니아	1.35	0.20	0.59	0.22	1.01	75.2%
스페인	1.62	0.11	0.92	0.22	1.26	77.6%
스웨덴	3.28	0.42	1.29	0.66	2.36	71.9%
영국	5.23	2.10	1.15	0.78	4.03	77.1%
한국	1.42	-	0.76	0.13	0.89	62.7%

주: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담배의 소매가격인 2,500원에 £1당 1,759원의 환율을 적용한 수치임. 종가세에는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수치임.
출처: 영국담배제조협회(<http://www.the-tma.org.uk>), "EU Cigarette Price and Tax Breakdown," 2007.

3. 석유류의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 리터당 US\$로 환산한 금액

〈표 Ⅲ-6〉 석유류세의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2006년 4/4분기 현재)

국가명	무연 휘발유(unleaded petrol)				경유(diesel)			
	세전가격	세금 (VAT포함)	가격	세금/ 가격	세전가격	세금 (VAT포함)	가격	세금/ 가격
호주	0.616	0.379	0.995	38.1%	0.666	0.385	1.051	36.6%
오스트리아	0.550	0.771	1.321	58.4%	0.608	0.642	1.250	51.4%
벨기에	0.717	1.064	1.781	59.7%	0.738	0.655	1.393	47.0%
캐나다	0.636	0.285	0.921	30.9%	0.678	0.215	0.893	24.1%
체코공화국	0.652	0.758	1.410	53.8%	0.683	0.662	1.345	49.2%
덴마크	0.672	1.029	1.701	60.5%	0.675	0.751	1.426	52.7%
핀란드	0.672	1.061	1.733	61.2%	0.681	0.646	1.327	48.7%
프랑스	0.490	1.006	1.496	67.2%	0.580	0.758	1.338	56.7%
독일	0.624	1.068	1.692	63.1%	0.657	0.800	1.457	54.9%
그리스	0.705	0.608	1.313	46.3%	0.735	0.534	1.269	42.1%
헝가리	0.562	0.746	1.308	57.0%	0.664	0.656	1.320	49.7%
아일랜드	0.685	0.825	1.510	54.6%	0.725	0.713	1.438	49.6%
이탈리아	0.586	0.992	1.578	62.9%	0.666	0.774	1.440	53.8%
일본	0.756	0.523	1.279	40.9%	0.706	0.311	1.017	30.6%
한국	0.680	0.925	1.605	57.6%	0.721	0.650	1.371	47.4%
룩셈부르크	0.682	0.750	1.432	52.4%	0.693	0.511	1.204	42.4%
멕시코	0.533	0.080	0.613	13.1%	0.431	0.065	0.496	13.1%
네덜란드	0.697	1.158	1.855	62.4%	0.713	0.699	1.412	49.5%
뉴질랜드	0.633	0.420	1.053	39.9%	0.687	0.088	0.775	11.4%
노르웨이	0.741	1.150	1.891	60.8%	0.880	0.910	1.790	50.8%
폴란드	0.683	0.699	1.382	50.6%	0.663	0.614	1.277	48.1%
포르투갈	0.711	1.009	1.720	58.7%	0.709	0.672	1.381	48.7%
슬로바키아 공화국	0.650	0.745	1.395	53.4%	0.675	0.709	1.384	51.2%
스페인	0.545	0.681	1.226	55.5%	0.629	0.541	1.170	46.2%
스웨덴	0.624	1.017	1.641	62.0%	0.748	0.819	1.567	52.3%
스위스	0.706	0.693	1.399	49.5%	0.722	0.719	1.441	49.9%
터키	0.761	1.213	1.974	61.4%	0.779	0.799	1.578	50.6%
영국	0.626	1.146	1.772	64.7%	0.672	1.154	1.826	63.2%
미국	0.652	0.105	0.757	13.9%	0.65	0.122	0.772	15.8%
평균	0.650	0.790	1.440	52.1%	0.684	0.606	1.290	44.4%

자료: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Prices & Taxes 2006 4th Quarter*.

4. 자동차 취득단계 세금의 국제비교

- EU에서는 등록비용(Registration fee or charge)과는 별도로 새로 생산되거나 수입된 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성격의 세금(Registration tax)을 부과
-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음
- 2006년 10대 자동차 생산국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영국(자료: 세계자동차공업협회, www.oica.net)
 - 이들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은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표 III-7〉 자동차 취득단계 세금의 국제비교(2006년 1월 현재)

	부가 가치세	취득 단계에서의 세금	총세금 (2000cc 자동차기준)	등록비 (fee)
오스트리아	20%	연료소비량 기준 최대 16%	30%	167.75유로
벨기에	21%	cc를 11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함(2,000cc는 495유로)	25%	31유로
시프러스	15%	cc를 6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산화탄소배출량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해줌(2,000cc는 5,420시프러스화)	68%	500 시프러스화
체코	19%	n/a	19%	CZK 800
독일	16%	n/a	16%	25.6유로
덴마크	25%	차량가격 덴마크화 64,200까지는 최대105%, 64,200 초과가격은 180%	155%	1,180 덴마크화
에스토니아	18%	n/a	18%	102.28유로
스페인	16%	휘발유차 1,600cc 미만은 7%, 1,600cc 이상은 12%, 경유차 2,000cc 미만은 7%, 2,000cc 이상은 12%	28%	68유로
핀란드	22%	휘발유차 28%(공제~650유로) 경유차 28%(공제~450유로)	53%	n/a
프랑스	19.6%	n/a	19.6%	30유로
그리스	19%	cc를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2,000cc 는 40%)	49%	n/a
헝가리	25%	경유차와 휘발류 차로 구분한 뒤 cc를 기준으로 8등 급으로 구분해서 세금을 부과함 (2,000cc 휘발류차는 헝가리화 960,000)	44%	15,300 헝가리화

〈표 Ⅲ-7〉의 계속

	부가 가치세	취득 단계에서의 세금	총세금 (2000cc 자동차기준)	등록비 (fee)
아일랜드	21%	1,400cc 미만 22.5%, 1,400cc 이상 1,900cc 미만 25%, 1,900cc 이상 30%	57%	n/a
이탈리아	20%	53kw를 이하 150.81유로 53kw를 초과 3.51유로	21%	42유로
리투아니아	18%	n/a	18%	11.3유로
룩셈부르크	15%	n/a	15%	12.39유로
라트비아	18%	승용차에 373유로를 부과	20%	29.2유로
말타	18%	cc를 5등급으로 나누어 부과 (2,000cc의 경우 65%)	95%	n/a
네덜란드	19%	가격+이산화탄소배출량기준 (휘발유차 45.2%~1,540유로, 경유차 45.2%+328 유로)	57%	41.5유로
폴란드	22%	2,000cc 이하 3.1%, 2,000cc 초과 13.6%	25%	PLN 670
포르투갈	21%	1,250cc 이하는 1cc당 3.83유로를 적용하고 1,250cc 이하는 1cc당 9.06유로를 적용함. 그 후 일정액을 공 제하여 세액을 계산 (2,000cc의 경우 8.86×2,000-8,813)	67%	30유로
스웨덴	25%	n/a	25%	n/a
슬로베니아	20%	자동차의 가격을 9등급으로 구분한 뒤 등급별로 1% 에서 13%까지 적용함	29%	n/a
슬로바키아	19%	n/a	19%	Sk 1,000
영국	17.5%	n/a	17.5%	£38

자료: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Tax guide 2006*.

Ⅳ. 요약

1.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비교

〈표 IV-1〉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비교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형태	원화 환산	각국 화폐	원화 환산	각국 화폐	원화 환산	각국 화폐	원화 환산
주류 (1L)	맥주	종가세	72%	\$0.21	197	£0.13	241	\$0.31	263
	와인	종가세	72%	\$0.33	320	£1.78	3,131	\$0.62	522
	증류주	종가세	72%	\$4.44	4,245	£7.82	13,769	\$11.69	9,852
담배 (1갑)	필련	종량세	962원	\$1.26	1,203	£2.17+22% (3,822원+22%)		\$1.64	1,382
유류 (1L)	휘발유	종량세	630원	\$0.11	101	£0.52	906	\$0.1	84
	경유	종량세	404원	\$0.12	117	£0.48	850	\$0.04	34
자동차	2,000cc 이하	종가세	5%	n/a		n/a		\$1,872	1,576,823
	2,000cc 초과	종가세	10%						
개별품목		－투전기 등 －수렵용 총포 －녹용, 로열젤리, 향수 －보석 등 귀금속 －고급제품(사진기, 시계, 모피, 용단, 가구)		－중장비 －타이어 －대형자동차 －낚시 및 활 장비 －백신 －통신 및 운송서비스 －환경세 (원유, ODC)		－환경세(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세, 기후변화세, 쓰레기매립세)		－자동차에 이용되는 에어컨	

〈표 IV-1〉의 계속

		일 본		대 만		홍 콩		중 국	
		각국 화폐	원화 환산	각국 화폐	원화 환산	각국 화폐	원화 환산	각국 화폐	원화 환산
주류 (1L)	맥주	¥220	1,807	\$26	764	종가세	20%	0.25元	30
	와인	¥80	657	\$70	2,508	종가세	40%	종가세	10%
	증류주	¥400	3,040	\$185	5,439	종가세	100%	종가세	10%
담배 (1갑)	궐련	¥175	1,437	\$16.8	494	\$16.08	1,978	(0.06元+45%) (7원+45%)	
유류 (1L)	휘발유	¥48.6	399	\$6.83	201	\$6.06	178	0.2元	24
	경유	n/a		\$3.99	117	\$1.11	33	0.1元	12
자동차	2,000cc 이하	n/a		종가세	25%	n/a		종가세	3~5%
	2,000cc 초과			종가세	35%			종가세	9~20%
개별품목		- 전기세 - 골프코스 이용세 - 온천세		- 타이어 - 시멘트 - 음료수(과일주스, 청량음료 등) - 유리 - 전자제품(냉장고, TV, 에어컨, 세습기, 비디오, 카세트, 녹음기, 전축, 전자오븐) - 유흥세(영화, 공연장, 당구장, 볼링장, 골프장 등)		n/a		- 타이어 - 화장품 등 - 장신구 및 귀금속류(보석 등) - 골프공 및 용품 - 고급 손목시계 - 요트 - 1회용 나무젓가락 - 원목바닥재(마루)	

주: 1. 주류: 1L로 환산, 와인은 알콜도수 10% 기준, 1(와인)궐련=3.78L, 증류주는 알콜도수 40% 기준, 맥주는 5% 기준, 1톤=1,000L

담배: 20개 피 1갑 기준, 부가가치세는 제외, 소비세(교육세포함, 각종 부담금 제외)

자동차세: 캐나다는 자동차의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 일반적인 승용차의 중량인 1,450kg을 기준으로 함

미국은 연방세+주세(평균값 기준), 캐나다는 연방세

2. 적용 환율표

국가	환율(원/각국 화폐)
미국 달러	955.51
일본 엔(100)	821.49
영국 파운드	1,759.1
캐나다 달러	842.32
홍콩 달러	123
중국 렌민비	119.81
대만 달러	29.4

주: 위 환율은 2006년 연평균 기준이며,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
자료: 외환은행(www.keb.co.kr/ibs)

2. OECD국가의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 비교

(주류, 담배, 유류세, 자동차세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는 제외)

〈표 IV-2〉 OECD 국가의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 비교

국가명	대 상 품 목
오스트리아	- 설탕
벨기에	- 설탕 - 포장세(cotisation d'emballage)
캐나다	- 자동차용 에어컨
체코	- CFC(Ozone-Depleting Chemicals)
덴마크	- 식료품(초콜릿, 설탕, 아이스크림, 커피, 차, mineral water) - 환경(쓰레기세, 살충제, 제초제, CFC, CO ₂ , 재충전 ni·cd 배터리, 납축전지, carrier bassmade of paper, plastic etc., 질소, PVC and phthalates) - 기타(전구, 전기, 자동차 번호판, certain retail containers, 식탁용 식기류, 대형요트, 타이어, 성장촉진제(specific growth stimulants))
핀란드	- 음료수(non alcoholic beverages) - 의약품
프랑스	- 은에 대한 보증세(Garantie matieres or et argent) - 식용고기 거래에 대한 세금(Taxe sanitaire et d'org. marche des viandes) - 곡물(Taxe sur les cereales) - 밀가루(Taxe sur les farines) - 난방전기세(Taxe sur electricite et chauffage) - 육류고기(Taxe sur crops gras alimentaires) - 소, 돼지, 양 등(Taxe sur les viandes) - 의약품(pharmacies)
독일	- 전력(power) - 커피 - cotisation sugar UE
그리스	- 솜(coton)
헝가리	- 커피
이탈리아	- 설탕(sucre) - 전기세(energie electrique)
네덜란드	- 소프트 드링크 - 소음(noise pollution) - 환경세(environmental basis) - 식료품(food products) - 설탕저장세(sugar storage duty)
노르웨이	- 초콜릿, 사탕 - 설탕 - 음료수(non alcoholic beverages) - 전기 - 라디오, TV - 화장품 - co ₂ tax - 의약품

주: OECD 조세분류(Classification of Taxes)의 대분류-5000-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조세 가운데, 중분류-5120-특정(specific)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조세, 소분류-5121-Excises의 내용을 위주로 정리했음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참고문헌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6.
- 영화조세통람, 『조세편람』, 2007.
- 한국조세연구원, 『중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2006.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6.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www.ttb.gov).
-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
- IRS, *Excise Taxes for 2006*, IRS Publication 510, 2006.
- CCH editorial staff publication, *US Master Excise Tax Guide—fifth edition*, A
WoltersKluwer Company, 2005.
- 영국 국세청 소비세부문(<http://customs.hmrc.gov.uk>).
- 캐나다 국세청, *Excise Duty Notice 9*, 2006.
- 캐나다 국세청(www.cra-arc.gc.ca), “Current Rates of Excise Taxes.”
- 일본 재무성, *Comprehensive Handbook of Japanese Taxes 2006*.
- 대만 재무부, *Guide to ROC Taxes 2006*.
- 홍콩 관세 및 소비세부(www.customs.gov.hk).
- 영국담배제조협회(<http://www.the-tma.org.uk>), “EU Cigarette Price and Tax
Breakdown 2007.”
- IEA, *Energy Prices & Taxes 2006 4th Quarter*, 2006.
-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Tax guide*, 2006.
- HMRC, “HM Customs and Excise 2004–05 Accounts(HC447),” 2006.

세법연구 07-08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

2007년 11월 23일 인쇄

2007년 11월 29일 발행

저 자 성명재 · 박임수

발행인 황 성 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66-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